

추 가 약 정 서

[수출입은행 온렌딩대출(On-lending)용]

주식회사 제주은행 앞

년 월 일

본 인 : _____ (인)

본인은 제주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)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자 여신거래약정서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.

제1조 (금리변동주기 및 원리금상환방법)

- ① 고정금리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후 만기까지 금리가 동일합니다.
- ②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는 매 3개월이며, 대출 실행 후 원리금상환기일(만기일시상환방식의 경우 이자납부일) 도래시마다 기준금리가 변동됩니다.
- ③ 원리금상환기일(만기일시상환방식의 경우 이자납부일)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해당월로부터 2개월 후에 속하는 월의 15일이며, 자금 배정일이 해당 월의 15일 포함 그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월로부터 3개월 후에 속하는 월의 15일로 합니다.

제2조 (지연배상금)

지연배상금률은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%를 더하여 최고 연 15% 이내로 적용 하기로 합니다.

제3조 (중도상환수수료)

여신거래약정서 제3조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 조항에 불구하고 수출입은행 온렌딩대출 약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- ① 수출입은행 온렌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대여기관인 “수출입은행”에서 징수하며, 대출취급기관인 “제주은행”은 채무자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하여 수출입은행에 납부합니다.
- ②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 : 중도상환금액 X 0.5% X (잔여일수/대출기간)
 1. 잔여일수 : 중도상환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 일수를 의미합니다.
 2. 대출기간 :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로 의미하며, 단,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약정기일은 3년 후 응당일로 간주합니다.
- ③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예외 적용
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의 중소기업 또는 대출 약정기간 2년 미만인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.
 2.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 또는 상환기일로부터 1개월 전 응당일 이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.
- ④ 대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납부가 원칙이나, 외화대출의 경우 차주의 요청으로 원화 납부시 상환당일 수출입은행의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합니다.

제4조 (기타 사항)

- ① 본 대출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을 활용한 기업대출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지침 및 규정 등이 적용됨을 승인하고, 수출입은행에 여신지원 관련 신용정보가 제공됨을 확인합니다.
- ② 본 대출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적정 취급후 중요한 변동 발생하여 지원 부적격 기업이 되는 경우 수출입은행의 상환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며, 그 익일부터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
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본 추가약정서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이해하였습니다.

본 인 : _____ (인)

본인 및 자서확인

소속

직위

성명

(인)